

졸업생 시상 및 장학금 지급 규정

함열초등학교

1. 목적

6개년의 전 과정을 수료하고 졸업하게 되는 졸업 예정 학생의 개별 특성과 장점을 발굴, 시상하여 모든 학생들이 주인공이 되는 졸업식을 만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학교 생활을 성실히 마무리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어 격려하고자 함.

2. 방침

가. 시상 및 장학금 지급 규정은 졸업사정위원회에서 심의 및 결정한다.

나. 평가 기간은 학교생활 6개년을 기준으로 한다.

다. 평가 대상은 당해년도 졸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라. 학교장상은 서열을 두지 않고 '특기상'의 이름으로 6년간의 성취를 격려하는 상으로 하며, 학생 개개인의 능력과 특성에 맞게 분야를 두어 졸업생 모두에게 수여한다.

마. 학생 줄 세우기를 없애고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졸업식의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교외 은 시상하지 않는다.

바. 장학금 지급 대상 선정은 정해진 기준에 의거해 실시한다.

사. 학교장상 및 장학금 지급 대상자에 대한 심의 및 검토는 졸업일로부터 최소 5일 전까지 졸업사정위원회에서 완료한 후, 학교장으로부터 확정을 받는다.

아. 시상 및 장학금 지급에 대한 규정 개정, 대상자 심의 및 확정에 대한 사항은 회의록에 기록하며, 2022학년도 졸업사정위원회 위원의 결재를 받아 문서에 편철(업무관리시스템에 저장)한다.

3. 졸업사정위원회

가. 구성

1) 위원장(1인): 교감

2) 위원(4인): 교무부장(1인), 6학년 담임교사(3인)

4. 세부 계획

가. 학교장상

종류	의미	기준
특기상	학생들이 6년간 이론 성취와 특기를 격려하는 상	- 학생 개개인의 능력과 특기를 고려한 부문 선정 - 각 부문별 해당하는 학생
공로상	학생 자치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한 학생들에게 감사의 의미를 전하는 상	- 전교어린이회 회장 및 부회장

나. 장학금 지급

1) 대상 선정 기준

순위	내용	동위 시 선정 기준 (위쪽 우선)
1순위	소년소녀가장	전원 선정
2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수급자(중위소득 30% 이하) -의료급여수급자(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수급자(중위소득 43% 이하) -교육급여수급자(중위소득 50% 이하)
3순위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수준이 낮은 가정 우선
4순위	담임 추천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여 실제 가정 형편이 곤란한 학생)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2) 장학금 수혜자와 장학금 액수 선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졸업사정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참고하여 학교장이 결정할 수 있다.

5. 예외 사항

가. 대외상

대외상은 시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1) 해당 기관(단체)에 속해있고 이와 관련된 공적이 있어 특정 학생 이름으로 상장이 발급된 경우
- 2) 기타 졸업사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된 경우

나. 장학금

- 1) 기관(단체)에서 특정 학생 이름으로 장학금이 지급된 경우, 해당 학생에게 지급 (단, 한 학생에게 중복지급은 하지 않는다)
- 2) 기타 졸업사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된 경우

6. 기타

이 규정은 2022학년도 졸업생에게 적용·시행하며 규정의 수정 보완이 필요한 경우 졸업사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할 수 있다.